

“도급계약파기 손해 산정시 소요경비 제외”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하도급사 임원이 임의로 하도급계약을 파기한 경우 하도급사가 입은 손해액 산정시 소요경비 등은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도급계약을 임의로 파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이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창원지방법원으로 최근 돌려보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하도급공사에 대한 공사이익 모두를 취득하기 위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사의 하도급계약을 파기하고 제3의 건설사를 인수해 잔여공사에 대한 새로운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결과적으로 당초 건설사에 대해 금전적 손해를 끼쳤고 이 같은 하도급계약 파기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돼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사의 하도급계약을 타절하고 잔여공사를 다른 건설사 이름으로 다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 업무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건설사에 대한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는 “A씨가 자사의 공사계약을 종료시키고 다른 회사로 하여금 새로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했더라도 그 공사계약금액 전부를 손해라고 볼 수는 없고 통상적인 소요경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손해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계약금액 전부를 회사의 손해라고 봐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관해 유죄라고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원심 파기이유를 설명했다. ●



놀라운 발견과 위대한 발명

신문보도의 진실성

독일의 물리학자이며 계몽주의 사상가였던 리히텐베르크는 어느 날 1년치의 신문을 하나로 묶어 한 권의 책처럼 읽어 내려갔다. 그렇게 하여 전체의 인상을 파악하려고 했던 것이다. 아마도 신문의 축색판을 맨 처음 필요로 한 사람이 그였던 모양이다. 신문을 끝까지 읽은 리히텐베르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두 번 다시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수고한 보람을 찾지 못했다. 내가 얻은 것은 50퍼센트의 그

릇된 희망과 47%의 그릇된 예언 그리고 3%의 진실뿐이었다.”

1967년 대통령 선거 때 여야 후보의 강연회에 동원된 청중의 수를 각 신문마다 다르게 보도하여 웃음거리가 된 사실을 돌이켜 볼 때 신문보도의 진실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일화라고 할 수 있다.

「말랑말랑한 절대상식」 中에서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여부 판단은 계약체결할 당시의 시평액 기준”

법제처 최종 유권해석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시점 당시 적용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이하 시평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정부의 최종 유권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뢰한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적용기준 관련 유권해석에서 이 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권해석은 공정위가 ‘하도급 거래공정화지침’에서 이미 이 같은 기준을 정해 적용하던 것을 법제처가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자의 ‘직전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원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토록 하면서, 시평액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은 ‘해당연도의 시평액’을 기준으로 판단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해석의 핵심은 건설하도급 거래의 원사업자

판단기준인 ‘해당연도의 시평액’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적용되는 시평액’인지 아니면 ‘직전 사업연도의 시평액’인지가 문제였다.

법제처는 “하도급법은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공시된 시평액을 기준으로 원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이 같은 하도급법의 취지는 시평액에 따라 도급계약이나 하도급계약이 이뤄지는 건산법령을 고려해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따라서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시된 시평액이 해당 사업자의 능력에 대한 현실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며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적용되는 시평액’을 기준으로 원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하도급법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회신했다. ☉



놀라운 발견과 위대한 발명

신문의 진화

신문은 고대 로마에서 손으로 써서 사람들 사이에 건넨 소식지나 보고서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기원전 59년 로마에서 발간된 신문은 주민들에게 행정 방침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 검투 경기, 점성술, 저명인사의 사망, 국민 투표 결과 등이 게재되었다.

17세기 초 네덜란드에서 발행된 코란토는 뉴스 레터의 기원으로 여겨지며 1704년 미국 최초의 일간신문인

데일리쿠란트가 창간되었고, 18세기 중엽에 신문 발행이 미국 전역에 번졌다.

신문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냈는데 영국의 더 타임스는 기록의 신문으로, 독일의 알게미아네는 의견의 신문으로, 프랑스의 르 몽드는 사진을 실지 않는 전통으로 이름났다.

「말랑말랑한 절대상식」 중에서